

2002. 10. 16. (수) 10:00
第92回 1次定例會 第3次 本會議

條例 및 規則 審查結果報告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. 거창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(안) | 1 면 |
| 2.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.. | 3 면 |

議會運營委員會
(委員長 崔 龍 煥)

거창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(안)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출일 : 2002. 8. 27.
- 제출자 : 최용환 의원 외 4명

나. 회부일자 : 2002. 9. 3.

다. 상정일자 : 2002. 10. 15.

라. 의안번호 : 제 2002 - 32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현재 의회에서 포상하고 있는 거창군 의회상 시상을 의결기관에서 시상하는 것은 의회 권한 외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의회상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전면 재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1991년 12월 30일 제정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 8회에 걸쳐 의회 개원 기념일에 시상하였으나,
- 거창군 의회상을 의결기관에서 시상하는 것은 의회권한 외의 소지가 있어 2001년부터 시상하지 않아 의회상 관련조항을 삭제한 의회포상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신주범 위원 : 본 조례 개정안의
 - 제2조 (포상대상) 본문 중 “관내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”를 “관내학교 학생에게”로
 - 제5조 (표창장)의 본문 중 “각 호”를 “각 항”으로
 - 제7조(상장) 제3호 중 “성적이 특히 우수한자”를 “성적이 우수한 자”로 수정 요구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본 개정 규칙안은 1991년 12월 30일 제정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 8회에 걸쳐 의회 개원 기념일에 시상하였으나
- 거창군 의회 상을 의결기관에서 시상하는 것은 의회권한 외의 소지가 있어 2001년부터 시상하지 않아 의회 상 관련조항을 삭제한 의회 포상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으나,
- 거창군의회포상규칙 제2조 중 “관내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”를 “관내학교 학생에게”로 하고 제5조 중 “각 호”를 “각 항”으로 제7조 제3호 중 “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”를 “성적이 우수한 자”로 내용상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신주범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략

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출일 : 2002. 8. 27.
- 제출자 : 신현기 의원 외 4명

나. 회부일자 : 2002. 9. 3.

다. 상정일자 : 2002. 10. 15.

라. 의안번호 : 제 2002 - 31 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“보건소, 농업기술센터, 문화복지센터, 수송대관리사무소, 수도사업소”를 삭제
⇒“단체 또는 기관으로 개정”(안 제5조 제1항 제4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도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도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

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생략